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성과 보고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남북한 관계 및 통일관련 공법연구를 확산시키고, 통일 연구를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통일관련 법제연구의 네트워크 확산 및 기존 연구성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관계 법제연구 및 통일관련 법제연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유(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실 실장)

I. 행사 개최배경, 목적

북한으로 초래된 핵위기 상황은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급반전 되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대화의 계속성을 고조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공법적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V)과 한국비교공법학회 그리고 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가 되고, 순천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후원이 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함께 토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II. 주요 논의 내용

이번 학술대회는 김현태 창원대 명예교수의 “남북 평화체제와 법적 대응과제”라는 기초 발제로 시작되었다. 기초발제 이후에는 공법학의 양대 분야인 헌법과 행정법으로 세션을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세션1은 주로 헌법적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세션2는 행정법적 주제와 토론을 하였다. 세션별로 4개의 주제가 발표되어 총 8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세션을 마친 후에는 8명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1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박사가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라는 주제로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분석하여 남북한간의 과도기적 관계 및 통일의 의미에 관하여 사실적 국가관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감사연구원의 홍종현 박사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 - 인권보장의 실질적 조건과 한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의 주요내용은 통일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통일의 전체적 파급효과와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비용 분담의 독일사례, 기타 통일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들이었다.

세 번째 발제는 육군사관학교 김소연 교수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의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간 합의의 발전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다.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발제는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적 논의’라는 주제로 부산대 황동혁 박사가 발제를 하였다. 발제의 내용은 북한 및 북한주민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들과 독일의 여러 판례들을 통일이전의 시기와 통일 과도기의 시기 그리고 통일 이후의 시기로 시계열적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행정법 주제를 다룬 세션 2에서도 4가지 세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박훈민 박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분야 연구”라는 주제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회 및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개정 법률안들을 분석하였으며, 자체적인 개정방향과 개정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부산대 조영승 박사가 “남북 4대 경험합의서의 공법적 검토”라는 주제이었다. 발제의 내용은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등 4대 남북경협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및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현재 보다 발전적인 형태와 내용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는 고려대학교 한명진 박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개념과 법적 지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제시 하였다. 네 번째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인 황선훈 교수의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이었다. 발제의 주요 내용은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법제도화 방안 및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발제가 주로 소장학자들이 하였던 것에 비해서 종합토의는 이중상 명예교수(경남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김중권 교수(중앙대), 류시조 교수(부산외대), 박인수 교수(영남대), 이금옥 교수(순천대),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조홍석 교수(경북대) 등 중진이상의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하여 학문세대의 신규조화를 이루었다.

III. 시사점 및 기대효과

남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분야는 공법학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과거 남북간의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상황변화는 공법적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남북한 및 통일관련 공법적 연구를 세부전공으로 하는 일부 법학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공법 전공자들이 함께 통일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남북한 관계 및 통일관련 공법연구를 확산시키고, 통일 연구를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통일관련 법제연구의 네트워크 확산 및 기존 연구성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관계 법제연구 및 통일관련 법제연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향후계획

이번 학술대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보완연구 및 추후연구를 계속 연구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며, 이번에 새로 발굴한 연구자 및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연구원과 공법학계와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